

# “94 세 제 개 편 안” 내년부터 이렇게 바뀐다.

재무부가 지난 8월 18일 발표한 '94 세제개혁안은 최근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국내의 경제 여건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된 조세제도의 새로운 틀로 평가할 수 있다.

재무부는 금융실명제의 본격 실시와 세계무역기구(WTO)출범 등에 따라 조세제도를 개편,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득세법등 12개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소득, 양도소득, 상속세는 오는 '96년부터 나머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한 지난 9월 12일 경제기획원에서는 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재무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일부 수정·통과시켰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글/편집자



## 금융소득 종합과세

-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 종합과세 -

오는 '96년 귀속분부터 실시되는 종합과세는 기준금액이 부부소득을 합산하여 4천만원이 초과하는 고액 금융소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재무부는 15%로 낮아지는 원천징수세율과 실효세율이 일치하는 금융소

득이 3천 6백만원이라고 밝히면서 징세행정편의상 4천만원으로 기준금액을 정했지만 시행성과를 보아 기준금액을 하향조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개인보유 금융자산의 45.1%에 달하는 규모로 비대해진 세금우대저축(현행 세율 최고 5%)도 종합과세대에 포함하고 이에 대한 원천분리세율은 10%로 높아진다.

## 소득세

- 4인가족 면세점년 1천57만원 -

소득세제의 개편에 따라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은 파격적으로 경감된다. 재무부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오는 '96년도 근로소득세 경감은 약 1조 5백억원에 달하면서 평균 경감률은 20%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

## 기 업 세 제

### - 법인세 내년 2%P 인하 -

법인세율은 일단 1억원을 초과하는 과표에 대해 32%에서 30%로 2%포인트 낮추고 앞으로 각종 감면축소와 함께 3~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가 인하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의 경우 세액의 20%까지를 감면해 주므로 실질적인 세부담률이 14.4%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세율을 더 내리는 것은 곤란하며 추후 과표구분금액인 1억원을 하향 조정하면서 세율을 내리도록 하겠다는 것이 재무부의 설명이다.

또 재무부는 장기적으로 법인세율 25%수준까지 연차적으로 인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세율인하 예시제의 도입은 유보키로 했다.

즉 세율인하는 조세감면의 축소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UR(우루과이라운드)협정상 금지보조금에 대한 유예기간이 내년 WTO출범이후에나 확정되기 때문에 주어진 기간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표 3) 법인세액예시

(단위: 백만원)

과세표준	세 액	
	현 행	개 정 안
1 억 원	18	18
5 억 원	146	138
10 억 원	306	288
50 억 원	1,586	1,488
1백억원	3,186	3,018

## 재 산 세 제

양도소득세율과 상속세율도 대폭

다. 최고세율을 현행 45%에서 40%로 낮추고 5%인 최저세율은 10%로 높이고 세율구간이 6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된다.

최저세율 인상으로 저소득계층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 한도를 8백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소득공제폭을 크게 확대했다. 이에 따라 세금을 한푼도 안내도 되는 면세점은 4인가족 기준 근로자의 경우 현재 5백 87만원(월 49만원)에서 연 1천57만원(88만원)으로 2배 가까이 올라가게 된다.

(표 1) 급여계층별 소득세부담 경감내역

(단위: 원·%)

근 로 자 세 부 담 (월 평 균)			
월 급여	94년	98년	경 감 률
50만	0	0	
60만	730	0	100.00
70만	3,530	0	100.00
80만	6,330	0	100.00
90만	9,130	1,070	88.28
100만	11,930	6,670	44.09
110만	15,850	12,270	22.59
120만	20,890	17,870	14.46
130만	25,930	23,470	9.49
140만	31,450	29,070	7.57
150만	39,970	36,000	9.93
160만	54,370	44,000	19.07
170만	68,770	52,000	24.39
180만	83,170	60,000	27.86
190만	97,570	69,330	28.94
200만	111,970	85,330	23.79
250만	219,950	165,330	24.83
300만	354,950	265,000	25.34
350만	491,600	365,000	25.75
400만	671,600	510,000	24.06

\* 94년세부담은 연월차수당(연 100만원), 식비(연 36만원), 기본4인가족 의료비 등 각종 공제의 평균공제수준을 감안하여 수정한 것임.

(표 2) 부양가족 면세점 수준 비교

(단위: 만원)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증 감 액
근 로 자	○ 독 신	373	629	+256
	○ 부 부	450	771	+321
	○ 부부+1자녀	519	914	+395
	○ 부부+2자녀	597	1,057	+470
		(월 49)	(월 88)	
사 업 자	○ 독 신	72	160	+88
	○ 부 부	126	260	+134
	○ 부부+1자녀	174	360	+186
	○ 부부+2자녀	222	460	+238

인하고 간소화하기로 했다. 양도소득세율은 2년이상 보유 개인의 경우 현행 40~60%(5단계)에서 오는 '96년부터 30~50%(3단계)로 조정된다. 다만 국민주택에 대한 별도 우대세율(30%)은 폐지된다.

상속세는 증여세와 세율체계가 통합되는 세율도 10~50%(5단계)에서 10~40%(4단계)로 개편된다.

이같은 세율인하는 결국 고소득층의 세부담만 낮춤으로써 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재무부측은 「상속세율을 높일수록 탈세등 조세회피가 늘어 결국 과세공평을 저해하는 결과가 있어 선진국에서도 소득세율의 최고세율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세율을 정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 소 비 세 제

부가가치세제는 1과세기간 납부세액이 12만원미만(연간 매출기준 1천2백만원)인 사업자에 대해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연차적으로 면제기준을 높여 과세특례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같은 소액부징수금액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현재 63만명의 사업자에서 전체 과세특례자 가운데 73%인 99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특별소비세제의 현실화와 관련, 보석등 6개품목에 대해 과세최저한도액이상인 물품을 전액과세하던 제도가 초과금액과세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과표현실화에 따른 세수증대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주세는 6대도시에 공급하는 경우와 장기보전이 가능한 탁주(켄, 팩포장)는 공급구역 제한대상에서 제외, 독점공급체제를 완화시켰다.

## 기 타 세 제

정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면제점을 현행 20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관련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의 20%를 세액공제하고 고급가구와 크리스탈제품에 대한 소득세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인상하기로 했다.

토초세감면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과세방법을 과세최저한 제도에서 소

득 공제제도로 변경, 토지초과 이득세 과표를 계산할 때 모든 납세자에 대해 2백만원까지 공제해 주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건설하는 아파트형 공장과 지방중소기업의 공장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하고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의 40%(연간 72만원)를 소득공제해 주기로 했다.

이 밖에 휘발류와 경유 등 유류에 대한 특소세(교통세)는 종량제로 전환하지 않고 가전제품과 청량음료 등에 대해 현행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표 4〉 세제 개편내용

항 목	개 정 안
특별소비세 · 등 유 · 크리스탈제품 · 고급가구 · 터키탕 입장세	10% 유지 15% 유지 15% 유지 1만원
토 초 세	기본공제로 전환, 200만원으로 상향조정
국민연금지역가입자	보험료의 40%(연간 72만원) 소득공제
중소진흥공단건설 아파트형 공장	양도세 50% 감면
정보처리업 지원	중소기업에는 20%세액 감면
어업·어업권 상속공제	자영어머이 200미만 어선과 10ha미만 어장상속때 1억원까지 공제

〈표 5〉 양도세율인하 세부담 경감효과

(단위: 백만원·%)

과세표준	세 액		경감율	
	현 행	개정안		
개 인	3천만원	12	9	25
	6천만원	25.5	21	17.6
	1억원	45.5	41	9.9
	2억원	100.5	91	9.5
법인	5억원	265.5	241	9.2
	1억원	25	20	20

## 세 정 개 혁

세무조사 사전통지제도를 신설, 세

무조사 7일 전에 사전통지를 하게 되고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조세시효를 조정, 조세포탈행위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와 같이 10년으로 새로 설정한다. 또 자료상에 대한 처벌근거도 신설,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거나 이를 주선·중개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가중처벌 규정도 마련됐다.

공소시효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장부보전 의무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내년부부터 각각 연장된다.

■ 일러스트/안이정